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(4판) [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용]

(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, '20.1.28(화) 00시 적용)

I. 대응 원칙

- (법적 근거)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임상양상,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'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' 을 적용하여 대응
- (대응 방향)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
 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,
 -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, 잠복기,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

※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보

현재까지 알려진 정보

- (병원체) 신종코로나바이러스(2019 novel Coronavirus)
- (감염원)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
- (전파경로) 동물 → 사람 → 사람 전파 추정
 - 사람간 전파는 비말(호흡기 분비물) 전파 추정
 - 가족간,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
- (전염력) $R_0=1.4\sim 2.5$ (SARS의 경우 3,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.6, 원내 전파 4)
- (잠복기) 불확실
 - *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-14일 추정
- (임상증상)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), 폐렴
- (위중도) 폐렴 보고사례 중 25%정도가 중증/위중 환자
 - * 고위험군은 고연령, 기저질환자
- (치명률) 약 4%

II. 사례 정의

□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

○ 확진환자(Confirmed case)

-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 - 진단검사 :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(PCR) 검사
 - ※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

○ 의사환자(Suspected case)

- 중국 후베이성*(우한시 포함)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-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난 자

○ 조사대상 유증상자(Patient Under Investigation, PUI)

-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*이 나타난 자
 - *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

※ 발열 : 37.5 ℃ 이상

* 우한[Wuhan, 武汉], 스옌[Shiyan, 十堰], 상양 [Xiangyang, 襄阳], 징먼[Jingmen, 荆门], 샤오간 [Xiaogan, 孝感], 황강[Huanggang, 黄冈], 어저우[Ezhou, 鄂州], 황스[Huangshi, 黄石], 셴닝[Xianning, 咸宁], 징저우[Jingzhou, 荆州], 이창[Yichang, 宜昌], 쑤이저우[Suizhou, 随州], 선농자임[Shennongjia, 神农架林], 텐먼[Tianmen, 天门], 첸장[Qianjiang, 潜江], 셴타오[Xiantao, 仙桃], 언스투자주먀오족자치주[Enshi Tujia and Miao, 恩施土家族苗]

< 신고 대상 >

- | | | |
|---|---|---|
| 1.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(우한시 포함) 방문 | + |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이 나타난 자 |
| 2.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| + |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이 나타난 자 |
| 3.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| + | 폐렴* 이 나타난 자 |

*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

III.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대응 절차

□ 대응 절차 요약

※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신고, 역학조사, 격리병상 이송, 진단검사 절차는 메르스 대응 절차와 유사하며,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된 후 격리병실 입원부터 격리 해제까지 조치사항은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와 대부분 동일

* 의사환자 접촉 시 메르스에 준해 개인보호구 착용(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, 1회용 가운(긴팔), 장갑, 눈 보호구 등)

- ◎ **(병상배정)**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격리병실 배정 및 입원 준비
- ◎ **(격리입원)** 개인보호구 착용한 상태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를 격리병실까지 이송
- ◎ **(검체채취)** 상/하기도 검체 채취 후 3중 포장용기에 포장 및 검체운송위탁업체에 전달
- ◎ **(환자관리)**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
- ◎ **(격리해제)** 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 해제 및 퇴원 조치

*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(043-719-7789,7790)로 연락

□ 대응 절차 상세

* 파란색 :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 절차와 다른 부분

단계	대응 절차
1. 병상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병상 상황 확인 - 의료진 및 직원의 야간·휴일·주말 근무 대비 마련 - 주·야간·휴일·주말 contact point 선정 •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상태, 이송 소요시간 확인 후 원내 진입 장소 알림 - 증상, 여행력 및 위험요인 노출, 국적 등 인적사항 확인 - 도착 10분 전 알림 안내 • 이송 중 연락 가능한 보건소 담당자 이름, 전화번호 확보
2. 입원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체 SOP에 따라 원내 담당부서 상황 공유 및 준비사항 요청 - 공유, 보고할/받을 부서명, 담당자, 연락처 확인(감염관리실, 간호부, 물류시설팀, 진단검사의학과, 영상의학과 등)

단계	대응 절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병상 준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요시 기존 환자 전동 - PPE, 폐기물통 등 전실물품 여분 확인 - 개인용 혈압계, 체온계, 청진기, 펜라이트, 설압자, 알콜손소독제, 생수, 비누, 수건, 샴푸 등 생활용품 준비 - 외국인의 경우 통역, 필요 시 특수식사 등 준비 • 이동 시 감염 노출 위험 최소화 사전 조치(또는 별도 동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제구역 설정, 승강기 단독 운영, 노출 최소화 작업 등 • 입원 행정절차 준비(원무팀 등)
3. 격리입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보호구 착용 의료진 및 이송 카트 대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현장통제요원 (직접접촉 없을 시) 마스크, 장갑 착용, 손소독 • 보건소/검역소 구급차 도착 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하차 도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자 관련 서류 확인(역학조사서 등) • 이동 시 감염 노출 위험 최소화 조치(또는 별도 동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제구역 관리, 승강기 단독 운영, 폐쇄구역 표식 등 • 전용 엘리베이터로 환자 이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송 시 이동경로의 환경표면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주의 - 접촉가능한 표면(엘리베이터 버튼 등) 소독 • 입원 수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가 직접 입원수속 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전 협의 • 입원 생활 및 진료, 검사 및 주의사항 등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원생활 중 주의사항, 입원 중 검사 및 진행 예정사항, 검체 채취, 진행예정 검사, 비용처리, 입실 및 CCTV 동의서 작성 등 * 입원일정 설명(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성 시 격리 해제 가능†) † 검사 결과 확인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병상 의료진과 협의 후 격리해제 결정 • 입원기간 중 의료진 감염 및 환경 오염 최소화 조치 (적절한 개인보호구 사용, 폐기물 관리, 세탁물 관리 등) • 의사소통 장비 사용법 안내(전화 또는 인터폰 등) • 격리병상 출입장부 기록 •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마스크 착용 유지
4. 발생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급감염병 '신종감염병증후군' 발생 신고
5. 진료·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활력징후 측정 • 검체채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기도(가래)* 검체 1개 및 상기도(구비인두 도말 혼합)** 검체 1개

단계	대응 절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가래 채취 시 충분한 양 채취 필요 **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수송 ※ 단,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(혈액 SST 5~10ml, 영아 1ml) 채취(가능할 경우 대변, 소변 채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검체포장(3중 포장용기 사용 및 오염방지 절차) • 검사 의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체의뢰서 작성 - 보건소 연락 및 검체 전달* *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용 검체는 검체운송위탁업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- 검체의뢰서, 검체종류, 채취시간, 이송시간 정보 확인(보건소와 의료기관 상호 확인) • 흉부 X선 검사 및 폐렴 양상 확인(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 실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상의학과 의료기사 개인보호구 착용 -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및 카트리지의 오염방지 조치 • 보건소로 환자 상태 알림(흉부 X선검사 시행 시 결과 포함)
6. 입원생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사 제공 및 폐기물 관리(지침에 따른 식기, 잔반 처리 등) • 보호자 면회(간접 면회; 화상 또는 유선) • CCTV 통해 환자 상태 지속 확인
7. 검사결과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건소에서 의사환자 결과를 의료기관 담당 의료진에게 통보
8. 격리해제, 퇴원 결정 및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질병관리본부와 격리병상 의료진 협의 후 격리해제 여부 결정* * 보건소가 의료기관에게 격리해제 결정 전달 • 시·도, 보건소에 퇴원 예정 및 퇴원 알림 • 퇴원 시 잠복기 내 주의사항, 증상 악화 시 보건소에 문의토록 안내
9. 퇴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퇴원 수속
10. 환경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경 소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소담당자 개인보호구 사용 및 소독 시 소독제 사용 • 폐기물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, 용기표면 소독 후 수거, 격리병실 밖 폐기물 보관장소로 운반, 운반장비 소독 등 원내 지침에 따름 • 린넨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격리환자의 세탁물 관리 원내 지침에 따름

- **(격리해제 기준)** 실험실 검사 결과에 따름
 - (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성일 경우
 - (확진환자) 회복 후 검체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

- **(격리해제 확인)**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보건소는 격리해제 일정 확인
 - (시·도)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격리해제 최종 결정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전달
 - * 환자 격리해제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
 - (보건소) 의료기관에 격리해제 결정사항 전달
 - * (의료기관 및 최초인지보건소)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해제 시,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(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)